

우송대학교 직원회 규정

제 정 2013. 6. 1
개 정 2016. 2. 1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대학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우송대학교 직원회(이하 "직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직원회는 대학발전과 직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학 측에 제안한다.

1. 직원이 수행하는 대학행정 제도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등 대학발전
2.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직원평의원 추천
3. 직원회의 임원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여 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
4. 그 밖의 대학 운영 관련 사항

제 2장 조 직

제3조(구성) 직원회 회원은 우송대학교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4조(회의) 직원회에는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임원) ① 직원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1명
2. 부의장 2명
3. 간사 1

② 직원회 임원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여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제5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원회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신분) ① 직원회 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대학은 직원회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원회 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회 회의 참석 시간 및 그 준비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의장은 직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각종 사무를 담당한다.

제 3장 임원 선출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직원회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5.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 관한 사항

제11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선거일) 직원회 임원 선거는 현 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3조 (후보등록) ① 직원회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직원회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 (투·개표의 절차와 방법) ① 선관위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 동일 장소에서 즉시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표시에는 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 1명씩을 참관시킬 수 있다.

제15조 (임원 선출) ① 직원회 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직원회 임원은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6조 (보궐선거) 직원회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 4장 전체 회의

제17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제18조(심의)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 2. 직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3. 대학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직원의 권익신장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 5. 직원 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 6. 노사협의회 상정 안건
- 7. 기타 의장 또는 회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회의성립 및 의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장 중이거나 휴직한 사람은 재적 회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20조(회의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참석자
 -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 4. 기타 토의 사항
- ② 매 회의마다 회장을 포함한 3인의 회원을 선정하여 회의록에 서명·날인한다.
- 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회의개최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 시 즉시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회의를 대신하여 개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직원회 심의·의결기구로서 각종 현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원평의원을 추천한

다.

제23조(선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원회 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2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장 재 정

제25조(재정) ① 직원회의 재정은 우송대학교 예산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직원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7장 기 타

제2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